

의안번호	제 762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12월 일 (제360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17년 12월 14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안)

의안
번호

762

제안연월일 : 2017년 12월 14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 이유

- 30년 만에 「대한민국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가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음
-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품안전,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고,
-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이를 건의하고자 함.

☐ 붙임 : 건의안

☐ 보낼곳 :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안)

30년 만에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가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품안전,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헌법에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공공재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공익형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국가 정책에서 농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공공재임을 감안할 때 국가의 역할 없이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역할입니다.

만약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 농업인들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공급하지만 그 대가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에게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보전, 환경보전, 수자원확보, 홍수방지, 기후 온난화 예방 등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인 「대한민국헌법」에 이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하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관련 법령에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